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2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조계원·주철현·문금주

서삼석 • 양부남 • 김우영

박수현 • 이기헌 • 양문석

김문수 · 김승원 · 박지원

권향엽 · 임미애 · 임호선

서미화 · 정일영 · 박해철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, 예술인의 문화적·사회적·경제적·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,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
최근 문화기본법에서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'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

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·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기관등의 책무) ① ~	제5조(국가기관등의 책무) ① ~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
	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
	당한 사유 없이 간섭ㆍ방해 또
	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